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이유서

현 행	개 정	개정이유
제67조의2(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) ① (생 략)	제67조의2(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	「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
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해당 자동차의 원동기를 정비	②	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
할 때에 잘 볼 수 있도록 원동기실 안쪽 벽에 표지판		위한 법률」('20. 5. 26.) 개정(이하
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		"알기 쉬운 법률 개정")사항 반영
고정해야 한다. 다만, 이륜자동차와 대형 · 초대형 승용		※ 부착할 → 붙일
·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원동기에 <u>부착할</u> 수 있다.		
제71조의3(평균 배출량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	제71조의3(평균 배출량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	자구수정 및 개정 누락조항 추가
상환 등) ①·② (생 략)	상환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	- (제3항 각 호 외의 부분) 법제처
③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에는 다음 각	3	법령 심사기준 변경으로 하위법
호의 사항이 <u>포함되어야</u> 한다.	<u>포함돼야</u>	령에서 준말 사용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- (제3항제2호) 알기 쉬운 법률 개
2. <u>당해연도</u> 초과분 발생사유	2. 해당연도	정사항 반영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	※ 당해연도 → 해당연도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	
제86조의2(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) ① (생 략)	제86조의2(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	
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신청기간은 이륜	②	
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(제87조제4항에 따른 이륜		
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말한다. 이하 "검사유효		
기간"이라 한다) 만료일(제86조의5에 따라 검사유효기		
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		
말한다)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, 이 신청기간 내		
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		
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		
일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. 다만,		
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		
가 된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		

현 행	개 정	개정이유
경과한 후 다시 사용신고가 된 경우(이 경우 다시 사	지난	알기 쉬운 법률 개정사항 반영
용신고가 된 날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)의 이		※ 경과한 → 지난
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은 다시 사용신고가 된		
날부터 62일 이내로 한다.		
[별표 1]	[별표 1]	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
<u>대기오염물질(</u> 제2조 관련)	<u>대기오염물질</u> (제2조 관련)	맞춰 화학용어 KS 기준(대한화학회
		유기화합물 명명법 기준) 및 국립국
1. ~ 38. (생 략)	1. ~ 38. (현행과 같음)	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적용하여
39. 불소화물	39. 불소화합물	수정
40. ~ 49. (생략)	40. ~ 49. (현행과 같음)	① 아세트알데히드 → 아세트알데하
50. 아세트알데히드	50. 아세트알데하이드	이드
51. ~ 60. (생 략)	51. ~ 60. (현행과 같음)	② 히드라진 → 하이드라진
61. 히드라진	61. 하이드라진	관리대상물질은 불소화합물임에도 불
62. ~ 64. (생 략)	62. ~ 64. (현행과 같음)	소화물과 불소화합물이 함께 사용되고
		있어 "불소화합물"로 통일적으로 규정
[별표 1의2]	[별표 1의2]	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
유해성대기감시물질(제2조의2 관련)	유해성대기감시물질(제2조의2 관련)	맞춰 화학용어 KS 기준(대한화학회
, , , , ,		유기화합물 명명법 기준) 및 국립국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	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적용하여
10. 불소화물	10. 불소화합물	수정
	- 11. ~ 22. (현행과 같음)	① 아세트알데히드 → 아세트알데하
23. 아세트알데히드	23. 아세트알데하이드	이드
24. ~ 34. (생 략)	24. ~ 34. (현행과 같음)	② 히드라진 → 하이드라진
35. 히드라진	35. 하이드라진	관리대상물질은 불소화합물임에도 불
36. ~ 43. (생 략)	36. ~ 43. (현행과 같음)	소화물과 불소화합물이 함께 사용되고
		있어 "불소화합물"로 통일적으로 규정

현 행	개 정	개정이유
[별표 2]	[별표 2]	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
<u>특 정 대 기 유 해 물</u> 질(제4조 관련)	<u>특 정 대 기 유 해 물</u> 질(제4조 관련)	맞춰 화학용어 KS 기준(대한화학회
		유기화합물 명명법 기준) 및 국립국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	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적용하여
10. 불소화물	10. 불소화합물	수정
11. ~ 22. (생 략)	11. ~ 22. (현행과 같음)	① 아세트알데히드 → 아세트알데하
23. 아세트알데히드	23. 아세트알데하이드	이드
24. ~ 34. (생 략)	24. ~ 34. (현행과 같음)	② 히드라진 → 하이드라진
35. 히드라진	35. 하이드라진	관리대상물질은 불소화합물임에도 불
		소화물과 불소화합물이 함께 사용되고
		있어 "불소화합물"로 통일적으로 규정
[별표 3]	[별표 3]	
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(제5조 관련)	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(제5조 관련)	
2.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가.·나. (생 략) 다. 2020년 1월 1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·변경허가 또는 신고·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·변경허가를 받거나신고·변경신고를 해야 한다. 다만, 흡수식 냉·온수기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, 2011년 1월 1일이후 설치된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·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·변경신고를 해야 한다.	2	대기배출시설에 편입(19.5.2 개정)되는 도서지역 발전시설 등에 대한 적용시기를 코로나-19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준비시간 부족 등을 감안해 2 0.12.31 → 21.12.31로 연장* *도서지역 발전시설(설비용량 1.5MW이상), 동물화장시설, 숯가마(부대시설포함 100㎡ 이상), 유기질비료제조시설, 습식시설동력 15kW이상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, 흡수식 냉온수기

	현 행			개 정	개정이유	
[별표 8] 대기오염물질 2. 2020년 1월 1일부	!의 배출허용기준 (저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		[별표 8] 대기오염물 ² 2	질의 배출허용기준(조		
가. 가스형태의 물 1) 일반적인 배·	-질		가			
대기오염물질	배출시설	배출허용기준	대기오염물질	배출시설	배출허용기준	
질소산화물 (NO ₂ 로서) 아크릴로니트릴	2) 발전시설 다) 기체연료 사용시설 (6) 그 밖의 발전시설 (가) 2001년 6월 설치시설	40(4) 이하	질소산화물 (NO₂로서)	2) 다) (6) (7) <u>2001년 6월</u> <u>30일</u> 이전- <u></u> 모든 배출시설(저	40(4) 이하	오기 수정
(ppm)	모든 배출시설_	3 이하	아크릴로니트릴 (ppm)	장시설 제외)	<u>3 이하</u> 20 이하	아크릴로니트릴 배출허용기준을 시설별로 세분화하고, 저장시설의 경
			VII /	<u>저장시설</u>	우 시설특성 등을 고려 20ppm이하 로 조정 * 미국 아크릴로니트릴 저장시설 배출 허용 기준 20ppm(Federal Register. Vol72, NO 135)	
[별표 8]]이 제츠된 Q 키고/-	레15고 코라)	[별표 8]	지이 베츠윈요키즈/-		
<u>내기오염출설</u> 2. 2020년 1월 1일부	!의 배출허용기준 (7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		<u>내기오염물</u> 2	질의 배출허용기준(7 		
가. 가스형태의 물			가			
비고.			비고.			

현 행	개 정	개정이유
5. 다음 표에 따른 시설의 질소산화물(NO2로서)에 대해서는 제2호가목1)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우선하여 각시설별로 설정된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한다.	5	
구분 대상시설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 2) 포스코 포항제철소 9호기 및 11 호기, 포스코 광양제철소 1호기 및 2호기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 60(4)ppm 이하를 적용하 고, 2021년 1월 1일부터 시설 중 포스코 30(4)ppm 이하를 적용한다. 포항제철소 및 3) 포스코 포항제철소 10호기, 포 관항제철소 및 3) 포스코 포항제철소 10호기, 포 스코 광양제철소 4호기 및 6호기 는 2021년 6월 30일까지 60(4)ppm 이하를 적용하고, 2021년 7월 1일부터	구분 대상시설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 2) 포스코 포항제철소 10호기 및 11호기, 포스코 광양제철소 1호 기 및 4호기는 2020년 12월 31 일까지 60(4)ppm 이하를 적용 2)다)(6) 해당 하고, 2021년 1월 1일부터 시설 중 포스코 30(4)ppm 이하를 적용한다. 포항제철소 및 3) 포스코 포항제철소 9호기, 포스 코 광양제철소 2호기 및 6호기는 2021년 6월 30일까지 60(4)ppm 이하를 적용하고, 2021년 7월 1일부터	배출허용기준을 예외 적용 받는 동일한 규모의 발전시설 간 일정을 조정(다른 설비공사와 연계해 SCR 공사를 계획했던 포항 9호기·광양 2호기 공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설비 납기지연 등으로 지연, 연내 SCR공사가 가능하고 용량 및 배출량이 동일한 포항 10호기·광양 4호기를 금년추진하고, 포항 9호기·광양 2호기는 21년 추진, '20.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건의사항 반영)
30(4)ppm 이하를 적용한다. (6)가) 해당 시 설 중 2007 년 1월 31일 이전에 촉매 반응을 이용하는 지설(선택 적 환원촉매장 치)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(2)나)(1) 해당 1) 삼천포화력발전소 5호기 및 6호기	30(4)ppm 이하를 적용한다. (7)가) 해당 시 설 중 2007 년 1월 31일 이전에 촉매 반응을 이용하는 시설(선택 적 환원촉매장 치)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(2)나)(1) 해당 1) 삼천포화력발전소 5호기 및 6호기	종전 개정시 오타 정정('20.하반기,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건의사항 반영)
파 시설 중 삼천포 는 2020년 12월 31일까지	파 시설 중 삼천포 는 2020년 12월 31일까지	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 조

현 행	개 정	개정이유
140(6)ppm 이하를 적용하고, 2021 년 1월 1일부터는 15(6)ppm 이하 를 적용한다. 2)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22년 5월 31일까지 140(6)ppm 이하를 적용한다. 3) 호남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21년 1월 31일까지 140(6)ppm 이하를 적용한다. 4) 동해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80(6)ppm 이하를 적용한다.	140(6)ppm 이하를 적용하고, 2021 년 1월 1일부터는 15(6)ppm 이하 를 적용한다. 2)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22년 5월 31일까지 140(6)ppm 이하를 적용한다. 3) 호남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140(6)pp m 이하를 적용한다. 4) 동해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80(6)ppm 이하를 적용한다.	정에 따라 호남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에 적용되는 예외규정을 2021 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
[별표 18의2] 인중・변경인증의 표시(제67조의2제1항 관련) 2. 전기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표시 가. ~ 타. (생 략) 비고. 1. 승용자동차는 후드 안쪽에 부착하고, 버스 및 화물자 동차는 출입문 안쪽에 부착한다. 2. (생 략)」 3.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표시	[별표 18의2]	알기 쉬운 법률 개정사항 반영 ※ 부착한다 → 붙인다
가. ~ 타. (생 략) 비고. 승용자동차는 후드 안쪽에 <u>부착하고</u> , 버스 및 화물자동차 는 출입문 안쪽에 <u>부착한다</u> . [별표 36]	기. ~ 타. (현행과 같음) 비고. <u>붙이고</u> , <u>붙인다</u> . [별표 36]	알기 쉬운 법률 개정사항 반영

현 행									개	정	개정이유		
행정 처분기준 (제134조 관련)							생 경치분기준 (제134조 관련)						νη/85/11
(제134조 판단) 2. 개별기준 마.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							98시판기판(제134의 원원) 2 마					- [제2호마목10)] 수수하거나 → 수 수(授受)하거나 - (제2호차목) 응하지 → 따르지, 하	
10)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이륜자동차정기 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<u>수수하거나</u>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						371	10)					위법령에서 준말 사용(아니한→않 은)	
차. 그 밖의 시) 런된 하		-기준		;	차		 우	 반사항			
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 나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<u>응하지 아니한</u> 경우						1개							
[별지 제35호의2서식]												알기 쉬운 법률 개정사항 반영	
												(뒤쪽)	※ 당해년도 → 해당년도
적용대상	구분	기준	기준	기준	기준	기준	기준	기준	판매량×기 준값 총계	<u>해당연도</u> 출고량(대)	<u>해당연도</u> 평균실적	평균배출량 기준	
합산모드	판매량 (대)												
명균배출허용기준 선택 차종	기준값 (g/km)												
	판매량× 기준값												
							이 규칙은	은 공포	부 한 날부터	칙 시행한다.			